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선박관리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서 수행 중이나 사업 위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박관리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협회 위탁 근거 정비(안 제12조)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을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비대상

대통령령 제 호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관리사업자가 관리하는 선원인력(외국인 선원인력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공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체제 구축 지원 업무</u>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747